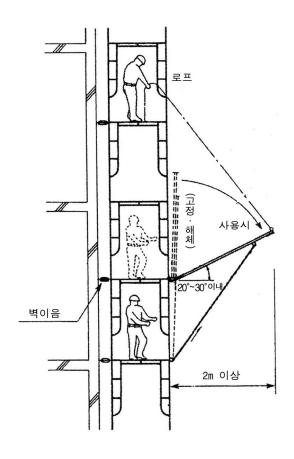
C - 26 - 2017



<그림 2> 낙하물 방지망 설치(예시)

6. 낙하물 방지망의 관리기준

- (1)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 후 3 개월 이내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낙하물이 발생하였거나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방망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.
- (2) 낙하물 방지망 주변에서 용접이나 컷팅 작업을 할 때,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, 용접방화포 등 불꽃,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실시하고 작업이 끝나면 방망의 손상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.
- (3) 방망에 적치되어 있는 낙하물 등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.